

상품특징



가입 1달 후부터 연금지급

-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노령화시대에 가입 1개월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을 지급(즉시형 가입시)



시중 실세금리에 따른 연금지급

-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연금을 지급해 드리며 저금리 시대에도 최저보증이율(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 초과시 연단위 복리 0.5%)로 연금의 안정성 확보

- ※ 이 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변동됩니다.
- ※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제외 후 부리



계약자 Life Style에 맞는 연금선택 가능

- 종신연금형
 - 일반형
 - 보증기간부 (10년, 20년, 30년, 100세, 기대여명 보증지급)
 - 보증금액부
- 초기집중형
 - 보증기간부(10년, 20년보증지급)
- 상속연금형
 - 종신평랜, 환급플랜 (10년, 15년, 20년)
- 확정기간연금형 (10년, 15년, 20년, 30년)



고연령자 연금설계 가능

- 가입나이
 - 즉시형 : 45~80세
 - 거치형 : 40~(연금개시나이-1)세 단, 80세까지 가입 가능



추가납입, 중도인출을 통한 유동성 확보 [거치형(중도인출은 상속연금형 환급플랜제외)에 한함]

- 추가납입 수수료
 - 추가납입 시: 추가납입보험료의 1.0%
 - 추가납입 후: 매월 추가납입기준금의 0.015%
- 중도인출 :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함,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 이내(2,000원 한도), 보험년도 기준 연 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 면제

이 안내장은 상품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청약할 때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할 때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 2)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3)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보험품질 보증제도(3대 기본 지키기)에 관한 안내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및 생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도인출 이후 해지환급금 또는 연금액 지급시에는 「인출금액(수수료 포함) 및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에 부러되는 이자」를 차감하므로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의 예상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규계약 가입에 따른 안내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관련 세법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교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차익 비교세 요건을 충족하여 상속연금형을 가입하셨더라도 10년 이내 해지시 보험차익 비교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 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범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상당 및 분쟁조정안내 보험계약에 관한 불만사항 및 분쟁(민원)이 있을 경우, 먼저 한화생명 홈페이지(www.hanwhalife.com)에 신청하시거나, 한화생명 콜센터(1588-6363), 방카슈랑스 전용콜센터(1577-63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유자과정상 분쟁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02-3460-3000)등으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기타 보험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생명보험협회(본부 02-2262-6600, www.kfia.or.kr)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 · 적금과는 다릅니다.

이 안내장은 상품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카슈랑스 부조리 신고센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도록 한 후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Tel: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www.fss.or.kr)



한화생명 바로연금보험 무배당



이제는 당신의 인생에 투자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게 사는 사람은 누가 봐도 멋있습니다. 젊어서는 자신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바치신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 이제, 당신의 인생에 투자하십시오.

노후에도 당당한 멋진 당신을 위해...



가입안내

상품명 **한화생명 바로연금보험 무배당**

구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p>즉시형</p> <p>· 일반형 · 보증기간부 [10년, 20년, 30년, 100세,기대여명 보증지급] · 보증금액부</p> <p>· 초기집중형 · 보증기간부(10년, 20년보증지급]</p> <p>상속연금형 종신평생</p>	없음	보험계약일부터 종신까지
		· 상속연금형 환급플랜 (10년형, 15년형, 20년형) · 확정기간연금형 (10년형, 15년형, 20년형, 30년형)
<p>가치형</p> <p>· 일반형 · 보증기간부 [10년, 20년, 30년, 100세, 기대여명 보증지급] · 보증금액부</p> <p>· 초기집중형 · 보증기간부(10년, 20년보증지급]</p> <p>상속연금형 종신평생</p> <p>· 상속연금형 환급플랜 (10년형, 15년형, 20년형)</p> <p>· 확정기간연금형 (10년형, 15년형, 20년형, 30년형)</p>	보험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상속연금형 환급플랜 (10년형, 15년형, 20년형)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당일부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 '기대여명'은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해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가입시점 통계표의 따른 피보험자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연금개시나이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다만, 기대여명이 5년 미만일 경우 기대여명은 5년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관련 세제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 · 일시납

가입한도 · 보험료 1,000만원 이상

구분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즉시형	45 ~ 80세	45 ~ 80세
가치형	40 ~ (연금개시나이 - 1)세 ※ 단, 80세 까지 가입가능	45 ~ 85세

추가납입 · 가치형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나이-3)세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가능

· 추가납입 수수료

- 추가 납입 시: 추가납입보험료의 1.0%
- 추가 납입 후: 매월 추가납입기준금의 0.015%

※ 추가납입 기준금: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총액에서 중도인출을 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중도인출 · 가치형(단, 상속연금형 환급플랜 제외)에 한하여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동안 계약일로부터 1개월 경과 이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매년 인출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의 일부를 중도인출 가능

· 중도인출 수수료: 인출금액의 0.2%이내(2,000원 한도)

다만, 보험년도 기준연 4회에 한하여 면제

연금지급예시

구분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연단위 복리A 2.48% 가정시	연단위 복리B 2.48% 가정시			
<p>종신연금형</p> <p>· 일반형 10년보증</p> <p>· 일반형 20년보증</p> <p>· 일반형 30년보증</p> <p>· 일반형 100세보증</p> <p>· 일반형 기대여명 보증</p> <p>· 보증금액부</p> <p>· 초기집중형 10년보증</p> <p>· 초기집중형 20년보증</p>	매월	28만9천원	매월	36만 4천원	매월	36만 4천원
	매월	28만1천원	매월	35만 4천원	매월	35만 4천원
	매월	26만4천원	매월	33만 5천원	매월	33만 5천원
	매월	23만1천원	매월	30만 3천원	매월	30만 3천원
	매월	27만9천원	매월	35만 1천원	매월	35만 1천원
	매월	25만5천원	매월	34만 3천원	매월	34만 3천원
	매월	42만9천원	매월	51만 8천원	매월	51만 8천원
	매월	21만4천원	매월	25만 9천원	매월	25만 9천원
	매월	34만2천원	매월	41만 5천원	매월	41만 5천원
	매월	17만1천원	매월	20만 7천원	매월	20만 7천원
<p>확정기간연금형</p> <p>· 10년형</p> <p>· 15년형</p> <p>· 20년형</p> <p>· 30년형</p>	매월	83만2천원	매월	89만 3천원	매월	89만 3천원
	매월	56만6천원	매월	62만 9천원	매월	62만 9천원
	매월	43만3천원	매월	49만 7천원	매월	49만 7천원
	매월	29만9천원	매월	36만 5천원	매월	36만 5천원
<p>상속연금형</p> <p>· 환급플랜</p> <p>· 종신평생</p>	매월	5만3천원	매월	17만 1천원	매월	17만 1천원
	매월	6만원	매월	17만 7천원	매월	17만 7천원
	매월	6만3천원	매월	18만원	매월	18만원
	매월	7만5천원	매월	18만 6천원	매월	18만 6천원

※ 최저보증이율을 가정한 연금액 예시와 관련하여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예시된 연금액보다 실제 수령한 연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향후 수령할 연금액은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예시된 연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10년, 20년, 30년, 100세 또는 기대여명보증지급)의 경우 보험수익자는 연금개시 이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 또는 기대여명 중 계약체결시 선택한 기간)의 연금액을,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잔여 확정지급기간 동안의 연금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또한 같습니다.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가치형에만 적용) : 가입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당일의 전일까지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 즉시형 :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종신평생은 가입일부터 종신까지, 확정기간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환급플랜은 가입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 가치형 :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종신평생은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기간연금형은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당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상속연금형 환급플랜은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당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 익월 계약 해당일까지

※ 납입한 주계약보험료 중 일부(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는 보장 및 보험회사 운영경비로 사용되며, 적립순보험료(주계약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만이 공시이율로 적립됩니다. 또한, 연금액은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최초 연금 개시 기준입니다. 두 번째 이후 지급되는 연금액은 공시이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연금)이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최저보증이율(계약일부터 10년 이내 연단위 복리 1.0%, 10년 초과 연단위 복리 0.5%), 연단위 복리A 2.48%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평균공시이율 2.5%"와 공시이율(연금) 2.48%(2020년 3월 현재, 매월변동) 중 적은 이율>, 연단위 복리B 2.48%<공시이율(연금) 2020년 3월 현재 2.48%, 매월변동>를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실제 연금 지급액은 예시된 금액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시이율이 변경된 경우(매 1개월마다 변동)
-가치형의 경우 중도인출 또는 추가납입 한 경우

※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이 상품에 적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은 2.5% 입니다.

※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연금액은 최저보증이율 연단위 복리 1.0%(가치기간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5%)기준으로 산출 되었으나, 계약일부터 10년 경과시에는 최저보증이율 연단위 복리 0.5%가 적용되므로 상기 예시 연금수령액보다 적습니다.

※ 상기 보장은 피보험자에 대한 보장으로 연금형태가 가치형 종신연금형 및 가치형 확정기간연금형일 경우 사망보장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까지입니다.(다만, 연금형태가 즉시형 종신연금형일 경우 사망보장이 없습니다.)

※ 종신연금형 유의사항

· 100세보증지급 및 기대여명보증지급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초기집중형의 경우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 및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되지 않을 것을 가정 하여 보증지급기간 동안은 보증지급기간 이후 지급되는 연금액의 100%가 추가로 지급되도록 연금액이 계산되 기 때문에 연금개시 이후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연금은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자에 대하여 해당 보험년도의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년도말까지의 잔여 연금월액은 매월 지급됩니다.

· 가치형으로 가입시 연금지급 개시 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보증금액부의 경우 연금개시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사망시 이미 지급된 연금액의 총합이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즉시형은 기본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상속연금형 환급플랜 유의사항

·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만기보험금'과 '연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연금액을 적게하여 '만기시 연금계약책임준비금이' 이미납입한 보험료 해당액과 같아지도록 합니다.

· 공시이율 하락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적립을 위해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며, 연금개시시점부터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상속연금형 및 확정기간연금형은 해지가 가능하나, 종신연금형은 연금개시 이후 해지가 안됩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은 세전 기준 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된 연금지급액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내용

사망 보험금	종신 연금형	가치형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즉시형	사망보험금이 없습니다.
확정기간 연금형	가치형	상속연금형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즉시형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만기보험금			기본보험료의 10%
			[상속연금형의 환급플랜만 지급]/ 책임준비금(이미 납입한 보험료 해당액)

※ 사망보험금의 보장기간은 가치형 종신연금형 및 가치형 확정기간연금형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상속연금형 및 즉시형 확정기간연금형은 보험기간동안 입니다.

※ 만기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는 경우 지급합니다.

※ 사망보험금은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해지환급금예시

상속연금형

가입예시 즉시형, 남자 60세, 일시납보험료 1억원	(단위 : 원, %)						
경과 기간	실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연단위 복리A 2.48% 가정시	연단위 복리B 2.48% 가정시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00,000,000	97,382,500	97.3	97,382,500	97.3	97,382,500	97.3
3년	100,000,000	97,571,900	97.5	97,571,900	97.5	97,571,900	97.5
5년	100,000,000	97,768,100	97.7	97,768,100	97.7	97,768,100	97.7
10년	100,000,000	98,288,100	98.2	98,288,100	98.2	98,288,100	98.2
15년	100,000,000	98,836,500	98.8	98,836,500	98.8	98,836,500	98.8
20년	100,000,000	99,398,500	99.3	99,398,500	99.3	99,398,500	99.3

환급플랜 10년

(단위 : 원, %)							
경과 기간	실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연단위 복리A 2.48% 가정시	연단위 복리B 2.48% 가정시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00,000,000	97,562,230	97.5	97,542,320	97.5	97,542,320	97.5
3년	100,000,000	98,107,180	98.1	98,059,650	98.0	98,059,650	98.0
5년	100,000,000	98,652,270	98.6	98,594,370	98.5	98,594,370	98.5
10년	100,000,000	100,000,000	100.0	100,000,000	100.0	100,000,000	100.0

※ 납입한 주계약보험료 중 일부(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는 보장 및 보험회사 운영경비로 사용되며, 적립순보험료(주계약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만이 공시이율로 적립됩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표는 각각 최저보증이율(계약일부터 10년 이내 연단위 복리 1.0%, 10년 초과 연단위 복리 0.5%), 연단위 복리A 2.48%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평균공시이율 2.5%"와 공시이율(연금) 2.48%(2020년 3월 현재, 매월변동) 중 적은 이율>, 연단위 복리B 2.48%<공시이율(연금) 2020년 3월 현재 2.48%, 매월변동>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실제 연금 지급액은 예시된 금액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이 상품에 적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은 2.5% 입니다.

※ 중도 해지시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 관리 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이미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은 세전 기준 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및 환급플랜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화생명 바로연금보험 무배당



이제는 당신의 인생에 투자 할 때 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게 사는 사람은
누가 봐도 멋있습니다.
젊어서는 자신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바치신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
이제, 당신의 인생에 투자하십시오.

노후에도 당당한 멋진 당신을 위해...

보험사
 한화생명



상품특징



가입 1달 후부터 연금지급

-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노령화시대에 가입 1개월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을 지급(즉시형 가입시)



시중 실세금리에 따른 연금지급

-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연금을 지급해 드리며 저금리 시대에도 최저보증이율(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 초과시 연단위 복리 0.5%)로 연금의 안정성 확보

- ※ 이 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변동됩니다.
- ※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제외 후 부리



계약자 Life Style에 맞는 연금선택 가능

- **중신연금형**
 - 일반형
 - 보증기간부 [10년, 20년, 30년, 100세, 기대여명 보증지급]
 - 보증금액부
- **초기집중형**
 - 보증기간부[10년, 20년보증지급]
- **상속연금형**
 - 중신플랜, 환급플랜 (10년, 15년, 20년)
- **확정기간연금형 (10년, 15년, 20년, 30년)**



고연령자 연금설계 가능

- 가입나이
 - 즉시형 : 45~80세
 - 거치형 : 40~(연금개시나이-1)세 단, 80세까지 가입 가능



추가납입, 중도인출을 통한 유동성 확보

[거치형(중도인출은 상속연금형 환급플랜제외)에 한함]

- **추가납입 수수료**
 - 추가납입 시 : 추가납입보험료의 1.0%
 - 추가납입 후 : 매월 추가납입기준금의 0.015%
- **중도인출 :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함,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 이내(2,000원 한도), 보험년도 기준 연 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 면제**

이 안내장은 상품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상품명 **한화생명 바로연금보험 무배당**

보험기간

		구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즉시형	중신 연금형	· 일반형 · 보증기간부 [10년, 20년, 30년, 100세, 기대여명 보증지급] · 보증금액부	없음	보험계약일로부터 중신까지
		· 초기집중형 · 보증기간부[10년, 20년보증지급]		
		상속연금형 환급플랜		
		· 상속연금형 환급플랜 (10년형, 15년형, 20년형) · 확정기간연금형 (10년형, 15년형, 20년형, 30년형)		보험계약일로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거치형	중신 연금형	· 일반형 · 보증기간부 [10년, 20년, 30년, 100세, 기대여명 보증지급] · 보증금액부	보험계약일로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당일로부터 중신까지
		· 초기집중형 · 보증기간부[10년, 20년보증지급]		
		상속연금형 환급플랜		
		· 상속연금형 환급플랜 (10년형, 15년형, 20년형)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당일로부터 최종연금 지급일 익월 계약 해당일 까지
		· 확정기간연금형 (10년형, 15년형, 20년형, 30년형)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당일로부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 '기대여명'은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해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가입시점 통계표의 따른 피보험자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연금개시나이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다만, 기대여명이 5년 미만일 경우 기대여명은 5년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관련 세제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 · 일시납

가입한도 · 보험료 1,000만원 이상

가입나이 및 연금 개시나이

구분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즉시형	45 ~ 80세	45 ~ 80세
거치형	40 ~ (연금개시나이 - 1)세 ※ 단, 80세 까지 가입가능	45 ~ 85세

추가납입

- 거치형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나이-3)세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가능
- 추가납입 수수료
 - 추가 납입 시 : 추가납입보험료의 1.0%
 - 추가 납입 후 : 매월 추가납입기준금의 0.015%

※ 추가납입 기준금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총액에서 중도인출을 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중도인출

- 거치형(단, 상속연금형 환급플랜 제외)에 한하여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동안 계약일로부터 1개월 경과 이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매년 인출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의 일부를 중도인출 가능
- 중도인출 수수료 : 인출금액의 0.2% 이내(2,000원 한도)
- 다만, 보험년도 기준 연 4회에 한하여 면제

연금지급예시

가입예시 | 즉시형, 남자 60세, 일시납보험료 1억원, 공시이율 연복리 2.48%(2020년 3월 현재) 지속 가정시

구분		최저보종이율 가정시		연단위 복리A 2.48% 가정시		연단위 복리B 2.48% 가정시		
중신연금형	일반형 10년보종	매월	28만9천원	매월	36만 4천원	매월	36만 4천원	
	일반형 20년보종	매월	28만1천원	매월	35만 4천원	매월	35만 4천원	
	일반형 30년보종	매월	26만4천원	매월	33만 5천원	매월	33만 5천원	
	일반형 100세보종	매월	23만1천원	매월	30만 3천원	매월	30만 3천원	
	일반형 기대여명 보종	매월	27만9천원	매월	35만 1천원	매월	35만 1천원	
	보종금액부		매월	25만5천원	매월	34만 3천원	매월	34만 3천원
	초기집중형 10년보종	10차년도 이내	매월	42만9천원	매월	51만 8천원	매월	51만 8천원
		11차년도 이후	매월	21만4천원	매월	25만 9천원	매월	25만 9천원
	초기집중형 20년보종	20차년도 이내	매월	34만2천원	매월	41만 5천원	매월	41만 5천원
		21차년도 이후	매월	17만1천원	매월	20만 7천원	매월	20만 7천원
확정기간연금형	10년형	매월	83만2천원	매월	89만 3천원	매월	89만 3천원	
	15년형	매월	56만6천원	매월	62만 9천원	매월	62만 9천원	
	20년형	매월	43만3천원	매월	49만 7천원	매월	49만 7천원	
	30년형	매월	29만9천원	매월	36만 5천원	매월	36만 5천원	
상속연금형	환급플랜	10년	매월	5만3천원	매월	17만 1천원	매월	17만 1천원
		15년	매월	6만원	매월	17만 7천원	매월	17만 7천원
		20년	매월	6만3천원	매월	18만원	매월	18만원
	중신플랜	매월	7만5천원	매월	18만 6천원	매월	18만 6천원	

※ 최저보종이율을 가정한 연금액 예시와 관련하여 최저보종이율 가정시 예시된 연금액보다 실제 수령한 연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향후 수령할 연금액은 최저보종이율 가정시 예시된 연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중신연금형(10년, 20년, 30년, 100세 또는 기대여명보종지급)의 경우 보험수익자는 연금개시 이후 보종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 또는 기대여명 중 계약체결시 선택한 기간)의 연금액을,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잔여 확정지급기간 동안의 연금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또한 같습니다.
 ※ 연금개시 전 보종기간(거치형에만 적용): 가입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당일의 전일까지
 ※ 연금개시 후 보종기간
 - 즉시형 : 중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중신플랜은 가입일부터 중신까지, 확정기간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환급플랜은 가입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 거치형 : 중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중신플랜은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당일부터 중신까지, 확정기간연금형은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당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상속연금형 환급플랜은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당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 익월 계약 해당일까지
 ※ 납입한 주계약보험료 중 일부(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는 보장 및 보험회사 운영경비로 사용되며, 적립수 보험료(주계약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만이 공시이율로 적립됩니다. 또한, 연금액은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최초 연금 개시 기준입니다. 두 번째 이후 지급되는 연금액은 공시이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연금)이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최저보종이율(계약일부터 10년 이내 연단위 복리 1.0%, 10년 초과 연단위 복리 0.5%), 연단위 복리A 2.48% <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평균공시이율 2.5%'와 공시이율(연금) 2.48%(2020년 3월 현재, 매월변동) 중 작은 이율>, 연단위 복리B 2.48% < 공시이율(연금) 2020년 3월 현재 2.48%, 매월변동>를 적용하여 산출방식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실제 연금 지급액은 예시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이 변경된 경우(매 1개월마다 변동)
 - 거치형의 경우 중도인출 또는 추가납입 한 경우

※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종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이 상봉에 적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은 2.5%입니다.
 ※ 최저보종이율 가정시 연금액은 최저보종이율 연단위 복리 1.0%(거치기간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5%)기준으로 산출 되었으나, 계약일부터 10년 경과시에는 최저보종이율 연단위 복리 0.5%가 적용되므로 상기 예시 연금수령액보다 적습니다.
 ※ 상기 보장은 피보험자에 대한 보장으로 연금형태가 거치형 중신연금형 및 거치형 확정기간연금형인 경우 사망보장은 연금개시 전 보종기간까지입니다.(다만, 연금형태가 즉시형 중신연금형인 경우 사망보장이 없습니다.)
 ※ 중신연금형 유의사항
 - 100세보종지급 및 기대여명보종지급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초기집중형의 경우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 및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되지 않을 것을 가정하여 보종지급기간 동안은 보종지급기간 이후 지급되는 연금액의 100%가 추가로 지급되도록 연금액이 계산되 기 때문에 연금개시 이후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연금은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자에 대하여 해당 보종년도의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종년도말까지의 잔여 연금액은 매월 지급됩니다.
 - 거치형으로 가입시 연금지급 개시 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보종금액부의 경우 연금개시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사망시 이미 지급된 연금액의 총합이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즉시형은 기본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상속연금형 환급플랜 유의사항
 -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산출방식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만기보험금'과 '연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연금액을 적게하여 '만기시 연금계약책임준비금'이 '이미납입한 보험료 해당액'과 같아지도록 합니다.
 - 공시이율 하락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적립을 위해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며, 연금개시시점부터 최저보종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상속연금형 및 확정기간연금형은 해지가 가능하나, 중신연금형은 연금개시 이후 해지가 안됩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은 세전 기준 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된 연금지급액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내용

사망 보험금	종신 연금형	거치형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즉시형	사망보험금이 없습니다.
	상속연금형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확정기간 연금형	거치형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즉시형		기본보험료의 10%	
만기보험금		[상속연금형의 환급플랜만 지급] / 책임준비금(이미 납입한 보험료 해당액)	

※ 사망보험금의 보장기간은 거치형 종신연금형 및 거치형 확정기간연금형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상속연금형 및 즉시형 확정기간연금형은 보험기간동안입니다.

※ 만기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는 경우 지급합니다.

※ 사망보험금은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해지환급금예시

상속연금형

종신플랜

가입예시 | 즉시형, 남자 60세, 일시납보험료 1억원 (단위: 원, %)

경과 기간	실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연단위 복리A 2.48% 가정시		연단위 복리B 2.48% 가정시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00,000,000	97,382,500	97.3	97,382,500	97.3	97,382,500	97.3
3년	100,000,000	97,571,900	97.5	97,571,900	97.5	97,571,900	97.5
5년	100,000,000	97,768,100	97.7	97,768,100	97.7	97,768,100	97.7
10년	100,000,000	98,288,100	98.2	98,288,100	98.2	98,288,100	98.2
15년	100,000,000	98,836,500	98.8	98,836,500	98.8	98,836,500	98.8
20년	100,000,000	99,398,500	99.3	99,398,500	99.3	99,398,500	99.3

환급플랜 10년

가입예시 | 즉시형, 남자 60세, 일시납보험료 1억원 (단위: 원, %)

경과 기간	실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연단위 복리A 2.48% 가정시		연단위 복리B 2.48% 가정시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00,000,000	97,562,230	97.5	97,542,320	97.5	97,542,320	97.5
3년	100,000,000	98,107,180	98.1	98,059,650	98.0	98,059,650	98.0
5년	100,000,000	98,652,270	98.6	98,594,370	98.5	98,594,370	98.5
10년	100,000,000	100,000,000	100.0	100,000,000	100.0	100,000,000	100.0

※ 납입한 주계약보험료 중 일부(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는 보장 및 보험회사 운영경비로 사용되며, 적립순보험료(주계약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만이 공시이율로 적립됩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표는 각각 최저보증이율(계약일부터 10년 이내 연단위 복리 1.0%, 10년 초과 연단위 복리 0.5%), 연단위 복리A 2.48% <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평균공시이율 2.5% > 와 공시이율(연금) 2.48%(2020년 3월 현재, 매월변동) 중 작은 이율>, 연단위 복리B 2.48% <공시이율(연금) 2020년 3월 현재 2.48%, 매월변동>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다만, 공시이율(매 1개월마다 변동)이 변경되었을 경우 상기 예시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이 상황에 적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은 2.5%입니다.

※ 중도 해지시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 관리 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이미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은 세전 기준 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청약할 때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할 때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 2) 전모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3) 청약의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보험품질 보증제도(3대 기본 지키기)에 관한 안내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및 생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도인출 이후 해지환급금 또는 연금액 지급시에는 '인출금액(수수료 포함)' 및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에 부리는 이자,를 차감하므로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의 예상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규계약 가입에 따른 안내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계주택 관련 세법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교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차익 비교세 요건을 충족하여 상속연금형을 가입하셨더라도 10년 이내 해지 시 보험차익 비교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 나 사도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보험계약에 관한 불만사항 및 분쟁(민원)이 있을 경우, 먼저 한화생명 홈페이지(www.hanwhalife.com)에 신청하시거나, 한화생명 콜센터(1588-6363), 방카슈랑스 전용콜센터(1577-63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유효기간상 분쟁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등으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기타 보험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생명보험협회(본부 02-2262-6600, www.kfia.or.kr)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릅니다.

이 안내장은 상품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카슈랑스 부조리 신고센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도록 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Tel: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www.fss.or.kr)

보험사



1577-6301